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실행(失行)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내외법(內外法) 위반을 중심으로-

최수현*

차례

1. 들어가며
2. 내외법의 실행(實行)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속 내외법 위반
3.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속 내외법 위반의 형상화 방식
 - 1) 위반의 원인
 - 2) 위반 여성의 정절 고수 제시 방식
 - 3) 위반에 대한 인식과 대응
4.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내외법 위반 형상화의 의미
5.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내외법 위반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조선후기 꾸준히 향유된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는 내외법을 위반하는 여성들이 상당수 등장한다. 그런데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은 내외법을 위반한 여성들이 위반 당시 실절하지 않았음을 앵혈의 증명이나 동행인의 제시와 같은 전략을 취해서라도 보여줌으로써 위반 여성들을 처벌하기보다 가문 안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울러 여성들이 위반하는 동기를 강상윤리의 고수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 제시하며, 위반 여성들을 이 행위만으로 악인으로 규정 짓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위반 여성이 느끼는 심적 고통을 섬

*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세하게 작품 안에서 묘사하며, 여성의 가문으로의 복귀에 시가 가부장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같은 내외법 위반의 재현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이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정절과 관련해 겪는 지난한 고통을 드러내주는 동시에 내외법의 위반을 실행(失行)으로 인식하나 실절(失節)과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핵심어 :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 내외법, 규범 위반, 섹슈얼리티, 정절, 실행(失行), 실절(失節)

1. 들어가며

17세기부터 창작 및 향유가 이루어진 국문장편소설에는 외간 남성과 마주치는 여성이나 길 위를 유리(遊離)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이 같은 여성의 행동은 작품이 향유되던 당시 통용되던 내외법(內外法)을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반은 악한 성품뿐 아니라 선한 성품을 지닌 이들에게서도 나타나며, 우연이나 타의에 의해 위반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여성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려진다. 아울러 소설은 실절(失節)에 이르지 않는 한 처벌보다 여성을 가문 안으로 수용하는 대응을 보여준다. 조선은 익히 알려진 것처럼 유교적 남녀관에 입각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관리한 사회이다. 특히 조선중기를 거쳐 후기에 이르러 정절이데올로기가 더욱 강화되었던 점¹⁾을 고려한다면, 사대부가 여성들이 주 향유층으로 알려진 국문장편소설에 이같이 내외법을 위반하는 여성의 형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더욱이 개별 작품에 따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국문장편소설은 이를 전

1) 장병인, 『조선 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연구』 121호, 한국사연구회, 2003, 112~113쪽 참조.

형성을 띤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는 곧 향유층의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이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는 것은 향유층의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을 보다 섬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내외법 위반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권도(權道), 앵혈(鶯血), 여성 수난담, 도로 유리, 복장전환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권도에 대해서는 정병설²⁾이 고전소설의 윤리논쟁적 성격을 정도와 권도를 통해 살피면서, <유효공선행록>에서 남장을 한 채 남편을 만나는 문제를, <완월회맹연>에서는 위기상황에서 남장을 하는 문제를 권도와 내외법과 연관해 밝혔다.

다음으로 앵혈에 대해서는 조혜란과 최길용이 주목하였다. 조혜란³⁾은 고소설에 나타난 남성 섹슈얼리티의 재현 양상을 살피는 중 <소현성록>을 함께 다루면서, <소현성록>에서 앵혈이 여성에게는 성적 순결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지켜야 하는 것인 반면 남성에게는 수치 대상으로 없애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밝혔다. 아울러 앵혈과 유사한 중국의 수궁사(守宮砂)가 중국 소설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앵혈이 조선의 소설에서 여성의 처녀성을 보증하고 유평화 시켜주는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을 통해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조선의 통제 강도를 짐작할 수 있음을 밝혔다. 최길용⁴⁾은 국문장편소설 32종에 나타난 앵혈 화소를 추출해, 그 서사 실상과 의미를 살폈다. 이를 통해 앵혈화소가 여성의 순결증표, 부부의 합궁여부 판단, 남편 박대 외표, 여성의 성 거부, 여성의 간통사실 입증, 앵혈 목격 곧 결혼 책임, 처녀성의 가치화, 비홍 조작, 남성 동정여부 판별, 동정남 앵혈 씻기, 동정남 희롱하기, 여성 신

2) 정병설, 『정도과 권도, 고전소설의 윤리 논쟁적 성격과 서사적 의미』, 『관악어문 연구』 2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5.

3) 조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남성 섹슈얼리티의 재현 양상』, 『고소설연구』 제20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4) 최길용, 『고소설에 나타나는 앵혈화소의 서사실상과 의미』, 『고소설연구』 제2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분 증명, 이름 및 가족 관계 증명, 정혼 사실 증명을 보여줌을 밝혔다. 이 중 내외법과 관련해 앵혈 화소의 기능을 살핀 것은 여성의 순결 증표, 앵혈 목격 곧 결혼 책임, 여성 신분 증명 등이다.

다음으로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 수난담을 살피면서 내외법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장시광⁵⁾은 <소현성록> 연작, <현몽쌍룡기> 연작, <유효공선행록> 연작, <쌍천기봉>, <완월회맹연> 등의 작품에서 여성이 겪는 수난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수난으로 구분하고, 수난을 해결하는 방식을 살펴 가부장제 질곡 속에서 여성이 겪는 수난의 의미를 구체화 하였다. 이런 논의 가운데 내외법과 관련해 여성들이 정절을 지키고 자 투신이나 훼손(毀面) 하는 것, 여성들이 도로 유리를 하게 되는 정황 등을 함께 다루었다. 여성의 도로 유리와 관련해서는 정혜경⁶⁾도 주목하였다. 조선 후기 장편소설에 나타난 감정의 미학을 논하면서 수치심과 관련해 <소현성록>의 이옥주, <유효공선행록>의 정씨가 도로를 유리했던 경험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는 조선시대 내외법으로 여성의 바깥출입을 엄격히 제한했던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국문장편소설이 대상은 아니지만 고소설 속 여성인물의 유랑에 대해 주목한 연구가 있다. 최기숙⁷⁾은 17세기 소설 <최척전>, <숙향

-
- 5) 장시광, 「<소현성록> 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28집, 우리어문연구학회, 2009; 장시광,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 45, 배달말학회, 2009; 장시광,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 의식」, 『어문론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장시광, 「<현몽쌍룡기> 연작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국어국문학』 152, 국어국문학회, 2009; 장시광, 「운명과 초월의 서사-<임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 『고소설연구』 제31집, 한국고소설학회, 2011; 장시광, 「<쌍천기봉>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장시광, 「대하소설 여성수난담의 성격-<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47, 동양고전연구학회, 2012.
- 6) 정혜경, 「조선 후기 장편소설의 감정의 미학-<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현씨양옹쌍린기>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2, 198~199쪽.
- 7) 최기숙,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랑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 3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전>, <사씨남정기>를 대상으로 고소설에 재현된 길 위의 여성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와 귀환의 의미를 규명하면서, 작중 인물의 정서 체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독자들이 이 서사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구조를 밝혔다.

한편 최어진⁸⁾은 국문장편소설 속 복장전환에 주목하여, 이는 서사적 기능에 따라 애정실현형, 애정갈등형, 영웅부각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남성 우위의 속이기 구현, 여성 수난담의 형성, 인물 외양 묘사의 확대 측면이 있음을 밝혔다.

이 같은 선행 연구들은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과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⁹⁾ 그런데 이상의 연구들은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내외법 위반의 재현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여전히 전형성을 띤 채로 국문장편소설에 내외법 위반이 그려지는 것의 의미와 이 같은 재현이 가능하도록 국문장편소설이 취하고 있는 형상화 방식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글에서는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내외법 위반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를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국문장편소설 중 유형성을 띤 작품군이자 오랜 기간 향유되어왔다는 점에서 국문장편소설의 내외법 재현 양상을 살피기에 적합한 대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우선 조선시대 내외법의 범주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 속 내외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위반의 의도, 정절 고수 제시 방식, 위반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8) 최어진, 『고전장편소설의 복장전환 화소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3.

9) 이와 함께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내외법 위반에 관한 논의는 개별 작품을 다루는 작품론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논의가 축적되었다.

10) 대상 작품은 다음과 같다. <소현성록> 이화여대 소장본 15권 15책(<소씨삼대록> 합본), <유효공선행록> 규장각 소장본 12권 12책, <유씨삼대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0권 20책, <성현공숙렬기> 규장각 소장본 25권 25책, <임씨삼대록> 장서각 소장본 40권 40책, <현몽쌍룡기> 장서각 소장본 18권 18책, <조씨삼대록> 서강대 소장본 40권 40책이다.

2. 내외법의 실행(實行)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속 내외법 위반

내외법(內外法)은 조선사회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규제¹¹⁾로 이는 남녀의 행실에 대해 일러둔 예론(禮論)에서 그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왔다.

- 남녀는 한자리에 섞여 안지 말고, 시렁에 함께 옷을 걸지 말며, 수건과 빗을 함께 사용하지 말고, 물건을 직접 주고받아서도 안 된다. …(중략)… 혼인을 한 여자는 큰 변고가 생기지 않는 한 친정에 출입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혼인한 고모와 손위 누이와 손아래 누이와 딸이 친정에 왔을 경우 형제가 한자리에 앉지 말 것이며 같은 그릇에 먹지 말아야 한다. 『예기(禮記)』 『곡례 상(曲禮 上)』¹²⁾
- 여자는 집안에 있어야 하며 안마당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여논어(女論語)』¹³⁾

인용문과 같이 『여논어』와 『예기』에는 남녀의 접촉에 대한 제한과 남녀의 소임을 구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는 유교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는 남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같은 덕목들은 사회 통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의 하나로 양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관리하고자 했던 조선에 들어와 보다 구체적인 규제들로 나타난다.¹⁴⁾

11) 이순구, 『조선초기 내외법의 성립과 전개』, 『청계사학』 5, 한국학중앙연구원, 1988, 114쪽.

12) “男女不雜坐. 不同櫛櫛, 不同巾櫛, 不親授. …(중략)… 女子許嫁, 纓, 非有大故, 不入其門. 姑姊妹, 女子, 已嫁而反, 兄弟弗與同席而坐, 弗與同器而食.” 『禮記』 『曲禮上』, (번역은 소혜황후 지음, 이경하 주해, 『내훈』, 한길사, 2011, 47~48쪽 참고.)

13) “女有在室 莫出閨定”, 왕상 편, 이숙인 역, 『여논어』, 『여사서』, 여이연, 2003, 105쪽.

14) 아래 제시한 규제들과 내외법에 대한 역사적 논의는 이숙인의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숙인, 『정절의 역사』, 푸른역사, 2014, 30~32쪽.

- 양반의 부녀는 부모, 친형제, 자매, 친백숙부, 고모, 친외숙, 이모외의 사람과 내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여기는 자는 실행으로 논한다. <<경제육전>>, 1397년, 태조6년
- 부녀와 여승이 절에 올라가는 것은 실절한 것으로 논한다. <예전>, <<경제육전>>, 1407년, 태종7년
- 유생과 부녀로 절에 올라간 자, 사족부녀로 산천에서 유흥을 즐긴 자는 장 1백에 처한다. <형전>, <<경국대전>>, 1485년, 성종16년
- 다른 남자가 치마를 잡아당기거나 그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장면을 본 남편이 화가 지나쳐 잘못 사람을 죽였을 경우 모두 가벼운 형률로 처분한다. <<신보수교집록>>, 1739년, 영조15년

주지하다시피 조선은 건국 초부터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관리하는 법제들을 만들었는데, 내외법은 이 가운데 하나이다. 위의 규제에서 확인되듯, 여성이 마주대할 수 있는 남성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여성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내외법은 구체화되었다. 즉 사족(士族) 여성이 마주할 수 있는 인물 범주를 가족 안에서도 부모, 친형제, 자매, 친백숙부, 고모, 친외숙, 이모로 한정시켰으며, 여성이 규방을 나서 집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이는 태종 4년에 3품 이상의 정실부인은 사망이 뚫려 있는 평교자를 타는 것을 금지 해 여성이 규방 밖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시선에 그 몸이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규제들을 마련한 것에서도 확인된다.¹⁵⁾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층 가문의 일상을 담아낸 국문장편소설은 내외법에 대한 인식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작중 인물들은 외간 남녀

15) 『태종실록』 권7 4년 5월 25일; 정지영, 『조선시대 부녀의 노출과 외출 : 규제와 틈새』, 『여성과 역사』 2집, 한국여성사학회, 2005, 153~154쪽.

가 마주칠 것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들이 살아가는 가옥 구조도 남녀유별(男女有別)을 고려해 설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씨삼대록>에서 설연창은 임희린의 며느리가 된 딸 설성염을 만나러 임씨 가문에 방문했을 때 설성염의 내당 침소가 아닌 별당에서 설성염과 재회 하며, 별당이 내당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곧 외현으로 나온다. 이때 설연창의 아들이자 임씨 가문의 사위인 설희광은 부친과 다르게 내당에 들어가 태부인을 비롯한 임씨 가문 여성들에게 인사를 드린다.¹⁶⁾ 이로 미루어볼 때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은 내외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물들의 동선뿐 아니라 공간 배치까지 섬세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속 내외법 위반의 형상화 방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작품에 나타난 내외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자. 이 글에서는 내외법 위반을 소설이 향유된 조선사회의 내외법에 미루어, 여성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와 외간 남성과 마주쳤을 때로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집밖에 나간 경우는 여성의 행적을 주위 인물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와 도로를 유리하는 경우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집밖을 나갔더라도 행적을 알 수 있는 근친(覲親), 황궁 출입, 유배와 같은 경우는 위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유배는 유배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보호자가 배행한다는 점과 행적이 주위 인물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위반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유배지까지 가는 도중이나 유배지에서 자객 및 도적을 만나 행적이 표연해진 경우는 위반에 포함하기로 한다. 또 악인의 모해로 집밖을 나서는 경우라도 친정이나 시가에서 그 행적을 알며, 집밖으로 나가는 동안 가마를 이용해 움직인 경우 위반에 포함하지 않는다.

16) “녀의 심돈흔물 드르니 깃부미 증천의 오를 듯하여 임왕을 도초 상부의 니르러 외현의 좌혔더니 이윽하여 상세 노와 인도하여 힝각 별당의 니르리 설쇼제 던지도지하여 노와 부공기 덜하고 …(중략)… 너당이 ㄱㄱ오무로 설공 부지 오리 잇지 못하여 외현으로 노와 왕으로 슈작홀시 병부는 너당의 드러가 티부인기와 모든 디 두루두루 덜하고 문후흔 후” <임씨삼대록> 26권 46~48쪽.

다음으로 외간 남성과의 마주침에는 이혼한 부부의 만남이나 작중 인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만남은 위반에 포함하지 않고자 한다. 기실 출거당한 상황에서 전남편은 외간 남성의 범주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내외법이 여성의 실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전남편은 실절을 범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작중 인물들이 전남편을 외간 남성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는 위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남성이 급제나 혼례로 인해 잔치를 벌일 때 내당에서 태부인과 함께 있던 친인척 여성들과 마주치는 것은 위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 태부인과 함께 있는 친인척 여성들은 남성에게 어머니나 아주머니뻘에 가까운 이들로 소개되며, 남성의 모친과 한 공간 안에 있어 내외법 위반 상황이 아님을 작중 인물들 간에 공유하는 것으로 제시돼 위반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내외법 위반 사례를 사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반 여성의 신분, 위반의 원인, 위반 선택에서 여성의 주체성, 위반 시 여성이 마주친 남성, 위반 시 동행한 인물의 여부, 위반 시 여성의 액혈 간직 유무, 위반의 결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소현성록> 연작에 나타난 내외법 위반 사례

	위반 여성	신분	위반 원인	위반 선택	마주친 남성	위반 공간	동행	액혈 유무	위반 결과
<소현성록>									
1	소교영	이한림 부인	성적 욕망	자의	유장	유배지	×	언급없음	죽음
2	윤소저	윤평장 딸	부모원수 고발	자의	소현성	집밖	×	언급없음	유기 혼인
3	석명혜	석현 딸	석과 계교	타의	소현성	집안	0	0	소현성 혼인
4	가소저	가시랑 딸	파선 구조	우연	소현성	집밖	×	언급없음	왕생 혼인
<소씨삼대록>									
5	위선화	위의성 딸	혼인 꾀박	자의	소운경	집밖	0	언급없음	소운경 혼인
6	이옥주	이원기 딸	부모 죽음	자의	소운명	집밖	0	0	소운명 혼인
7	취씨	김현 부인	부모 죽음	자의	소운숙	집밖	0	언급없음	시가 복귀

[표 2] <유효공선행록> 연작에 나타난 내외법 위반 사례

	위반 여성	신분	위반 원인	위반 선택	마주친 남성	위반 공간	동행	행렬 유무	위반 결과
<유효공선행록>									
1	정씨1	강현수 부인	집탈 위기	타의	요정	집안	×	언급없음	자살
2	정씨2	유연 부인	재가 꺾박	자의	유연	집밖	0	언급없음	시가 복귀
<유씨삼대록>									
3	장혜영	장준 딸	부친 명에 의한 마주침	타의	유세형	집안	0	언급없음	유세형 혼인
4	설초벽	설경화 딸	부모 죽음 과거 응시	자의	유세창 황제	집밖	×	0	유세창 혼인
5	박영아	유세필 부인	친정부모 배행 중 도적 만남	타의	도적	집밖	0	0	시가 복귀
			피신	자의	양태보	집밖	×	0	
6	장설혜	장원경 딸	우연한 마주침	우연	유현	집안	0	언급없음	유현 혼인

[표 3] <성현공숙렬기> 연작에 나타난 내외법 위반 사례

	위반 여성	신분	위반 원인	위반 선택	마주친 남성	위반 공간	동행	행렬 유무	위반 결과
<성현공숙렬기>									
1	반연화	반계선 딸	남성 연모	자의	임희린	집안	×	0	임희린 혼인
		임희린 첩	간강	타의	한왕	집안	×	행렬소실	출거
			피신	자의	×	집밖	×	×	죽음
2	주소저	임희린 부인	유배지에서 도적방화 구출	타의	도적	유배지	0	×	시가 복귀
			피신	자의	×	집밖	×		
			남편 구하기	자의	황제	전쟁터	0		
			시모 구하기	자의	황제	집밖	×		
3	한자연	한경 손녀	도적 만남	자의	×	집밖	×	언급없음	임희린 혼인
			주소저 만나기	자의	×	집밖	0		
4	금화공주	왕각 양녀	투각 구출	타의	×	집밖	×	언급없음	임희린 첩
<임씨삼대록>									
5	설성엄	임창홍 부인	유배 가던 중 추격투각	타의	한왕 무리	유배지	0	×	시가 복귀
			피신	자의	×	집밖	0		
			남편 조력	자의	×	전쟁터	0		
6	목지란	목순 손녀	등문고(남성연모)	자의	황제	집밖	×	언급없음	임창홍 첩
7	임월혜	설희광 부인	납치	타의	×	집밖	0	0	시가 복귀
			피신	자의	×	집밖	0		
			남편 구하기	자의	설희광	전쟁터	0		
8	임방혜	설희필 부인	납치	타의	×	집밖	×	언급없음	시가 복귀
			피신	자의	×	집밖	0		
			남편 구하기 올케 구하기	자의	임경홍	집밖	0		
9	옥선군주	임창홍 첩	모해발각 피신	자의	×	집밖	×	0	시가 복귀

10	육경군주	한왕 딸 설희광 첩	간통	자의	양왕	집안	×	소실언급	시가에 발각
			모해발각 피신	자의	×	집박	×	×	반란 죽음
			남성 연모	자의	×	집박	×	0	설희광 혼인
남경필양녀	모해 별입	자의	임피린	집박	×	0	.		
11	남영설	임재홍 첩 설희광 첩	모해 별입	자의	임친홍	집박		×	0
			강간	타의	장석자	집박	0	0	피신
			모해발각 피신	자의	공희경	집박	0	.	설희광 첩
			정체발각 피신	자의	×	집박	×		0
12	곽교란	임친홍 첩	강간 후 간통	타의 자의	남한옥	집안	×	소실언급	출거
13	주난벽	임경홍부인	남편핍박 피신	자의	×	집박	0	0	시가 복귀

[표 4] <현몽쌍룡기> 연작에 나타난 내외법 위반 사례

	위반 여성	신분	위반 원인	위반 선택	마주침 남성	위반 공간	동행	양혈 유무	위반 결과
<현몽쌍룡기>									
1	정채임	정세추 딸	혼인 핍박	자의	도적 조무	집박	0	언급없음	조무 혼인
		조무 부인	등문고(동생)	자의	황제	집박	×	×	시가 복귀
2	양옥설	조성 부인	등문고(남편)	자의	황제	집박	×	×	시가 복귀
<조씨삼대록>									
3	강옥연	강한림 딸	우연한 마주침	우연	조유현	집안	×	언급없음	조유현혼인
4	이화벽	이은 딸	부모 잃음	자의	상인위성 조유현	집박	×	0	조유현혼인
5	조월염	조무 딸	남성의 사모	타의	양인광	집안	0	0	양인광혼인
6	정빙요	조유현부인	부모 동행 중 도적 만남	타의	도적	집박	0	×	시가 복귀
			피신	자의	주점주인 호급사	집박	0		
7	천화군주	연왕 딸	남성 사모	자의	조운현	집안	0	언급없음	조운현혼인
8	범씨	설강 모친	등문고(아들)	자의	황제	집박	×	×	.
9	남선혜	조운현부인	남치 1차	타의	×	집박	×	×	시가 복귀
			남치 2차	타의	한왕	집박	×		
10	경미혜	경담 딸	조무 핍박	자의	도적	집박	×	언급없음	조유현혼인
11	조자염	조성 딸	우연한 마주침	우연	소경수	집안	0	언급없음	소경수혼인
12	곽월성	양인광부인	심당유폐 탈출	자의	×	집박	×	×	소경수혼인
13	진옥성	조운현부인	남편 핍박	타의	×	집박	0	×	시가 복귀
14	석태영	석중 딸	우연한 마주침	우연	조봉영	집안	0	언급없음	조봉영혼인
			남성의 사모	타의					
15	여소저	여태상 딸	우연한 마주침	우연	조명윤	집박	0	언급없음	조명윤혼인

위의 [표 1]~[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는 내외법을 위반하는 여성이 상당수 등장한다. 내외법 위반은 미혼 여성뿐 아니라 기혼 여성에게도 일어나며, 한 여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나

기도 한다. 또 위반은 다양한 동기에 의해 일어날 뿐더러 이는 우연이나 타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당수 여성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내외법 위반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외법 위반이 강간이나 간통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의 결과 대개 가문 안으로 위반 여성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내외법 위반의 형상화 방식을 이들 작품 가운데 집안과 집밖에서 두루 위반이 발견되며, 다양한 원인의 위반이 서사에서 비중이 높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성현공숙렬기> 연작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 속 내외법 위반의 형상화 방식

1) 위반의 원인

(1) 여성의 자발적 위반

① 상위 이데올로기 준수를 위한 위반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는 여성 스스로 내외법의 위반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수 나타나는데, 그 원인으로 높은 빈도로 제시되는 것이 효나 열절과 같은 상위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위반은 작품 안에서 선인으로 제시되는 이들에게서 발견되며, 집밖에서 위반이 일어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우선 열절을 위해 내외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도적의 핍박이나 다른 곳으로의 혼인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위기에 처한 남편을 구하기 위한 경우로 주로 나타난다. 기실 상층 여성들이 도적의 핍박을 받는 일은 흔한 것은 아니다. 도적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부중 안에 있을 때에는 쉽게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도적의 핍박을 받는 경우는 친정 부모를 따라 길을 나서거나 유배를 갈 때로 나타난다.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박영아는 도적의 꺾박을 받아 내외법을 위반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녀는 좌천당해 지방으로 이동하는 친정 부친을 따라 나섰다가 도적을 만나 모친을 살려주는 대가로 잡혀갔다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망쳐 남장을 한 채 신분을 위장하고 촌가에 머무른다. 이처럼 도적을 만나게 돼 의도하지 않았으나 내외법을 위반하게 된 박영아가 도적들이 있는 곳에서 홀로 다시 길 위로 나서는 것을 감행함으로써 내외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 정절을 지키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여성들은 정혼자나 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혼인 요구를 피하기 위해 집박으로 도망치기도 한다.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정부인은 출거 당해 친정에 있는 상황에서 친정 부모가 재가(再嫁)를 시키려하자 스스로 집을 나선다. 집박으로 나가는 행위가 규범을 어기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절개를 우선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이와 유사한 모습은 <소현성록> 연작의 윤소저, 이옥주 등에게서 발견된다. 또한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설성염, 임월혜, 임빙혜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나 길 위를 돌아다님으로써 내외법을 위반하는데, 이는 넓은 범주에서 남편에 대한 열행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¹⁸⁾

열절 다음으로 여성들이 상위 이데올로기 준수를 위해 내외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효의 실천을 위해서이다. <유효공선행록>의 설초벽은 설경화의 외동딸로 죽은 부모의 대를 잇기 위해 남장을 한 채 길을 떠돌며 삶을 이어간다.¹⁹⁾ 설초벽은 도로를 유리하던 중 유세창을 만나며, 과거에 응시해 황제와 신하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 같은 길 위를 유리하며 외간 남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는 엄연히 내외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부모의 대를 잇고자 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있다는

17) 장시광,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 45, 경상대 배달말학회, 2009, 224쪽.

18) 최수현, 「<임씨삼대록>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 93~94쪽.

19) 설초벽이 남장을 한 채 지낸 점은 부모가 일찍 죽고 돌봐줄 친척이 없어 나온 보신책임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174쪽.

점에서 이는 효를 위해 내외법 위반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은 <소현성록> 연작의 윤소저, 이옥주, <현몽쌍룡기연작>의 이화벽 등에게서도 확인된다.

② 삶 자체를 위한 위반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여성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삶 그 자체를 위해서 집밖에 머무르면서 내외법을 위반하기도 한다. 이 같은 위반은 성품이 악한 여성뿐 아니라 선한 여성에게서도 발견된다.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한자연, 금화공주, 옥선군주, 옥경군주, 남영설은 삶을 도모하기 위해 내외법을 위반을 감행한다. 이 중 옥선군주, 옥경군주, 남영설은 남성의 애정을 얻기 위해 동렬 관계에 놓인 여성을 여러 차례 모해하는데, 이 모해가 발각되거나 발각될 위기에 처했을 때 집밖을 나섬으로써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 옥선군주는 임창홍의 첫째 부인 설성염에게 벌인 모해가 발각되어 자신에게 처벌이 내려질 상황에서 조력자 이귀인이 있는 현경궁으로 피신한다.²⁰⁾ 이 상황은 옥선군주가 임부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거처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도망을 목적으로 임부를 나서 길 위로 자취를 옮겼다는 점에서 내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자연과 금화공주는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집밖에서의 생활을 감행한다. 한자연과 금화공주는 부모가 죽은 상황에서 대를 잇고자 하는 마음 없이 죽으려하다 태허법사에게 구출당한 후 삶을 연명한다. 이 과정에서 한자연과 금화공주는 도로를 유리하거나 다른 이의 집에 의탁하면서 삶을 이어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소현성록> 연작의 취씨에게서도 확인된다. 취씨는 출거당해 친정에 돌아가 지내던 중 부모가 죽자 살길을 도모해 다시 시택 근처로 오는데, 친정부모와 있던 고향에서 시택이 있는

20) “군췌 반드시 이 곳은 잊지 못할 스세니 금의 현경궁 니귀인은 황상의 총희라 … (중략)… 우리 다희 스톱을 도화하느니 맛당이 그 곳의 노으가 널을 의논하고 츄츄 설도하미 엇더하노 군췌 묘하를 칭사하미 능운이 춘교로 침쇼를 직희오고 군췌를 물고 현경궁으로 노으와” <임씨삼대록> 10권, 61쪽.

경사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3개월로 제시된다. 취씨는 경사에 도착했을 때 행동거지가 조용하고 태도가 정밀한 것이 천민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눈에 띄어 소운숙에게 잡히는데²¹⁾, 이는 길 위의 여성이 갖는 실절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절 위협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취씨가 길 위에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생계 도모라는 점에서 이는 삶 자체를 위해 위반을 감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빈도가 낮기는 하나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 여성들은 남편의 핍박으로 집밖을 나옴으로써 내외법을 위반하기도 한다. <성현공숙렬기> 연작에서 주난벽은 기생에게 미혹된 남편 임경홍이 정절을 의심한 나머지 죽이려 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집밖으로 나온다.

③ 남성의 애정을 얻기 위한 위반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는 남성의 애정을 얻기 위해 스스로 내외법을 위반하는 여성들도 나타난다. 이들은 좋아하는 남성 앞에 스스로 몸을 드러내 보이는 방식으로 내외법을 위반하기도 하며, 애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집밖으로 나가기도 한다. 대개 이 같은 위반은 악한 성품을 지닌 여성들에게서 발견되며, 이는 집밖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반연화, 목지란, 옥선군주, 남영설은 이러한 위반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들이다. 여부인의 조카 반연화는 사모하던 임희린의 애정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내외법 위반을 감행한다. 집에 온 고모 여부인을 보러 온 임희린을 우연을 가장해 자신의 방에 들르게 해 마주치고, 이를 임희린이 마치 자신을 겁탈하려 한 것처럼 꾸며 그 첩이 되는 데 성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모습은 <현몽쌍룡기>

21) “운숙이 …(중략)… 내 앓가 노상의셔 혼 너즈를 만나니 티되 정상하고 거지 조용 해야 천인이 아니로되 7장 용티어나 뵈는 거시라 길흙 건너거늘 잡아 디령하라 하였노라” <소현성록> 13권 99쪽; 이 상황은 소운숙이 취씨가 누이 소수빙을 괴롭히던 김현의 부인이라는 정황을 모른 채 길 위에 있다는 점 때문에 잡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소수빙의 원한을 갚아주고자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연작의 천화군주에게서도 발견된다.

이와 함께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성과 혼인하기 위해 집박을 나감으로써 내외법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성현공숙렬기> 연작에서 남영설은 임재홍의 애정을 얻고자 그 부인 소소저를 모해할 때나, 궤교란을 도와주기 위해 그녀가 사모하는 임천홍의 부인 성소저를 모해할 때 집박으로의 이동을 활발히 한다. 내외법 위반은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성품을 지닌 여성일지라도 상층 가문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란 이들이 정절과 관련된 내외법을 자유자재로 위반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이고 묘월에게 배운 변신술을 바탕으로 집박으로의 이동을 활발히 하는 남영설에게서 드물게 내외법을 빈번히 위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성들은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 내외법을 위반하기도 한다.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옥선군주는 자신의 좋아하던 임창홍과의 혼인을 위해 황제의 사혼령까지 받아 그 첩이 되나 끝내 냉대를 받자 급기야 내외법을 위반하고 집안 처소로 양왕을 불러 정을 나눈다.

(2) 타인에 의한 위반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 여성들은 다른 이로 인해 내외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먼저 남성에게 의해 내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여성들은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방문이나 돌입(突入)으로 인해 내외법을 위반하게 되는데, 이는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을 지닌 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또한 이는 여성이 미혼이든 기혼이든 일어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때 선한 성품을 지닌 여성들의 경우는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강현수 부인 정씨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돌입이 여성과의 마주침에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효공선행록> 연작에서 장혜애는 유세형과 혼례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내외법을 위반한다. 장혜애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던 유세형은 장인이 될 장준의 허락을 받아 장부에서 장혜애와 서로 인사를 나누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전에 남녀가

집안에서 서로 만나는 모습은 <현몽쌍룡기> 연작의 조월염, 석태영에게서도 발견되며, 이 경우 여성의 애정을 얻고자 한 남성의 한밤중 처소 돌입에 의해 내외법 위반이 일어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때 악한 성품을 지닌 여성의 경우 남성의 돌입은 마주침에서 그치지 않고 강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도 그려진다. <성현공숙렬기> 연작에서 임희린의 첩 반연화는 주소저를 겁탈하러 왔다 실패한 한왕의 처소 돌입으로, 임천홍의 첩 곽교란은 소소저를 겁탈하러 왔다 실패한 남환옥의 처소 돌입으로 겁탈을 당한다. 임재홍의 첩 남영설은 그간 저지른 악행이 발각될 순간에 도망을 쳐 새로운 거처에서 지내던 중, 이웃에 살던 홀아비 장석자의 밤중 돌입으로 인해 겁탈을 당한다. 이처럼 여성들은 집안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돌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외간 남성과 마주치게 됨으로써 내외법을 위반하게 된다.

또한 여성들은 또 다른 여성에 의해 내외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맞기도 한다. 이는 선한 성품을 지닌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주로 동렬 관계에 있는 여성들의 애정에 대한 욕망이나 가문에 대한 적대 감정으로 인해 위반이 벌어지며, 그 방식은 납치로 그려진다.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임월혜는 남편 설희광의 첩 옥경군주에 의해 납치되려던 상황에서 정진군의 시동들에게 구출당하나 집밖에 오랜 시간에 머무른다. 또 임빙혜는 임부에 악감정을 지닌 남영설에 의해 혼인 첫날 침소에서 납치를 당해 암혈로 옮겨지며, 곧 설성염이 보낸 시비들에게 구출당하나 시댁으로 복귀하지 않은 채 도은곡에서 머무른다. 이들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지만 납치를 당하거나 납치를 면할지라도 곧 가문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 집밖에 한동안 머무름으로써 내외법을 위반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3) 상황에 따른 위반

빈도수가 높은 편은 아니나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는 남녀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우연에 의해 마주하게 됨으로써 내외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

황도 나타난다. 이는 집안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며 드물게 집밖 공간에서도 벌어지기도 한다. 집안에서 발생한 우연에 의한 마주침은 여성의 가문에 용무가 있던 남성이 방문 했다가 미처 여성이 있는지 모르고 마주치게 된 경우가 주로 제시된다.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장설혜를 비롯해 <현몽쌍룡기> 연작의 강옥연, 조자염, 석태영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발견된다. 집밖에서 우연에 의해 외간 남성을 마주치는 사례는 <소현성록> 연작의 가소서, <현몽쌍룡기> 연작의 여소저에게서 발견된다. <소현성록> 연작의 가소저는 부모와 탄 배가 풍랑을 만나 파선되어 떠내려 오던 중 소현성에게 구출 당함으로써, <현몽쌍룡기> 연작의 여소저는 친척 잔치에서 조명윤과 마주치게 됨으로써 내외법을 위반한다.

2) 위반 여성의 정절 고수 제시 방식

여성이 외간 남성과 마주치거나 집밖으로 나가 행적이 묘연해진다는 것은 곧 주변으로부터 실절(失節)을 의심받는 상황을 초래한다. 그런데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은 내외법을 위반한 여성이 강간이나 간통에 이른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여성을 가문 안으로 수용하는 대응을 보여준다. 때문에 작품들은 여성이 실절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보이고자 하며, 이는 육체적 순결을 증명하거나 정황적 상황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 앵무새의 피에 주사를 푼 것을 팔위에 찍은 점으로 성 관계를 맺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 효능을 지닌 앵혈(鶯血)²²⁾을 통해 내외법을 위반한 여성의 육체적 순결을 증명하는 것은 <유효공선행록>의 설초벽, 박영아, <소현성록>의 이옥주 등에게서 확인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것²³⁾이기에 이 글에서는 정황적 상황을

22) 조혜란, 앞의 논문, 387~389쪽 참조; 최길용, 앞의 논문, 44~54쪽 참조.

23) 장시광,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론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258~259쪽; 한길연, 『여성교육과 부부갈등의 관련양상 연구-『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6,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1, 333쪽, 임

제시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외법을 위반하는 여성들이 모두 앵혈로 육체적 순결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의 표에서 확인되듯, 위반 여성 중 절반 가까이는 기혼 여성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남편과의 동침으로 앵혈이 지워져 실절 여부를 육체적 표식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가문으로 이 여성들을 수용할 때 앵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들의 실절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방법을 필요로 한다.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은 육체적 순결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정황을 통해 여성이 실절하지 않았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외법을 위반하는 여성 곁에 시비나 유모 같은 동행인을 붙여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이를 잠재적으로 둔다.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설성염은 유배지로 향하던 도중에 한왕의 추격을 받아 내외법을 위반하는데, 추격으로 인해 강에 투신하고 여선에게 구출을 받은 후에도 전쟁터에 나가 남편을 돕고 시택으로 복귀하는 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려진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내외법을 위반하였다더라도 정절을 고수했음을 증명할 요구를 받게 되는데, 한왕의 추격이 있던 시점에서 이미 설성염은 쌍둥이 아들을 출산한 상태로 앵혈을 지니고 있지 못한다. 이때 서시는 설성염이 한왕의 추격을 받은 시점부터 시택으로 복귀할 때까지 그 곁에 매송, 앵섬, 화앵과 같은 시비들을 함께 있게 함으로써 정황 상 그녀가 정절을 고수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이 시비들은 설성염과 함께 투강하며 여선이 있는 곳에 같이 머무르고 전쟁터에도 함께 출전하는 것으로 그려져 설성염과 일지도 떨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제시된다.²⁴⁾ 이는 임월혜에게서도 유사하게 나

치균, 『아내의 정숙함』을 의심하는 남편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방식 고찰, 『문학치료연구』 22권,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114쪽.

24) “미홍 잉섬이 가비아아 쇼저를 등의 업고 나는 드시 다르니 제 시네 일시의 통곡 하고 쓰로나 맞지 못하고 화잉이 잉섬을 쓰라 진덕하여 거르되 잉섬이 쇼저를 업고 독불니지하여 늙흔 지를 넘어 밧서 십여 리나 다르니 …(중략)… 이제 형세 위 급하니 솔지 못호리라 하고 몸을 쇼쇼와 체비긋치 강심의 썬여드니 미홍 잉섬 화잉 등이 일시의 썬여” <임씨삼대록> 17권 9~10쪽.

타난다. 임월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옥경군주의 질투로 인해 납치 될 위기에 처한 순간 여선의 시비들에게 구출 받는데, 이때 여선의 시비들은 임월혜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던 다섯 시녀를 함께 데리고 간다.²⁵⁾ 이 시비들 역시 임월혜가 시택으로 복귀할 때까지 함께 있음으로 인해 그녀가 정절을 고수했음을 정황상 말해줄 수 있는 이들이 된다.

이와 함께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들은 부부 동침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내외법을 위반한 여성의 정절 고수 여부를 보여주기도 한다. 즉 위반 여성의 앵혈 간직 여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서사에 유평화하지 않는 대신 위반 여성의 첫 동침 장면을 서술하는 것이다.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이 혼례를 올린 모든 부부의 동침 장면을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혼례의 절차만 묘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혼례 후 다음날 아침 문안인사 장면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체로 내외법을 위반한 미혼 여성들 가운데 앵혈 간직을 서사에서 부각시키지 않은 경우 이들 여성의 혼례 후 첫 부부 동침 장면을 보여준다.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장설혜는 집 안에서 유연과 우연히 마주침으로써 내외법을 위반하게 된다. 그런데 혼인을 올리는 과정에서 장설혜의 앵혈 여부에 대해 서사는 주목하지 않는 대신 첫 동침 상황을 장면으로 제시한다.²⁶⁾ 만일 동침 상황을 보여줄 때 앵혈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장면은 여성의 실절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므로, 아침 문안 장면 전에 동침 장면을 주목해 묘사한다는 것은 해당 여성의 내외법 위반이 휘절에까지 이르지 않았음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동행인을 제시하였지

25) “쇼저의 오기 시외와 주시를 거두쳐 운무 속의 너코 구름을 모라 곤륜산의 니르니” <임씨삼대륙> 20권 18쪽.

26) “샤인이 신방의 니르니 나위 슈막의 옥축이 놓혔고 금병 슈리의 미인이 단좌하여 시니 싱이 깃븐 흥이 하늘 궂고 즐거운 의식 바다 궂호여 나아가 옥슈를 년호여 굴오되 쇼저는 명문귀족의 슈림옥슈로 월하인연이 구든 고로 심규의 쫓다운 자취 외각을 만나니 이 엇디 턴의 아니리오 …(중략)… 당시 붓그리물 띄여 고개를 숙이니 절세훈 용안과 괴려훈 티되 축하의 빈이니 싱이 황홀년이하여 원앙금침의 지극훈 은익 교철의 비홀너라 ” <유씨삼대륙> 9권 78~79쪽.

만 앵혈을 서사에서 드러내지 않은 경우 중 <소현성록> 연작의 위선화,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장혜영, <현몽쌍룡기> 연작의 정채임, 경미혜, 조자염, 여소저에게서는 부부 동침 장면의 묘사가 나타난다.²⁷⁾

3) 위반에 대한 인식과 대응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예법을 교육받은 이들이다. 이러한 교육은 성품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의든 타의든 내외법을 위반하게 되었을 때 그 행동이 규범을 어긴 것임을 인지한다. 아울러 이를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이는 눈물과 탄식을 끊임없이 흘리는 것을 통해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서술된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내외법을 위반한 여성들 중 효나 열절과 같은 강상 윤리를 위해 위반을 선택한 이들도 위반에 대해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타의에 의해 내외법 위반 상황에 놓인, 즉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²⁸⁾ 남편의 핍박으로 인해 내외법을 위반하게 된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주난벽은 집밖으로 나오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구하러 온 시누이를 만남으로써 내외법을 위반한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다. 더욱이 남편의 핍박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위반을 감행한 것이며, 시비들을 대동해 집밖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시덕에 들어갈 명분을 전혀 갖지 못한 상황

27) 대체로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 내외법을 위반한 미혼 여성의 경우 앵혈이나 부부동침 장면 묘사를 통해 여성의 정절 고수 여부를 보여준다. 단 위반 여성이 <소현성록> 연작의 윤소저나 가소저처럼 중심가문 출신 인물이거나 중심가문으로 혼인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28) 이러한 점은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 부부 갈등이나 여성 수난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장시광, 『<현몽쌍룡기> 연작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국어국문학』 152, 국어국문학회, 2009, 371~395쪽. 이 글에서는 이와 함께 자의든 타의든 내외법을 위반한 여성들이 내외법 위반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내외법을 위반한 여성들이 위반 전 상황과 관련해 위반에 대한 마음과 그 이후 생활에 대해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도 아니다. 그럼에도 주난벽은 집밖을 나왔다는 행위를 두고 자신이 부녀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는 점을 끊임없이 자책하고 죄스러워한다.²⁹⁾ 이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할지라도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반연화처럼 남성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내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확인된다. 반연화는 위반 상황을 두고 눈물을 흘리거나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나 좋아하던 남성 앞에 몸을 드러내는 것을 혼인 성사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동이 규범을 위반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여성들의 자기 인식은 이후 서사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혼 여성의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위반 상황에 대해 죄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외법 위반 이전의 시가에서의 삶이 위반 이후 여성의 행동과 자기 인식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혼인 후 시부모나 남편으로 인해 시가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웠던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정씨나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임월혜, 주난벽과 같은 여성들은 자의든 타의든 내외법을 위반한 이후 자신의 행실을 비루한 것으로 규정하며 시가로의 복귀를 원치 않거나 남편과 남은 삶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난벽은 시댁으로 복귀해 머무르면서도 끊임없이 임경홍에게 부인 소임을 하지 않을 뜻을 전한다.³⁰⁾ 이는 동렬 관계에 놓인 여성으로 인해 시가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웠던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설성염이나 <현몽쌍룡기> 연작의 남선혜가 위반 행실을 두고 비천한 행실을 한 것으로 유사하게 규정하면서도 앞선 이들에 비해 시가로의 복귀를 거부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점은 미혼 당시 내외법을 위반한 여성 중 유리결식한 경험을 지닌 이들에게서도 발견된다. 혼인으로 삶이 안정된 후에도 이들은 과거

29) “구촉히 슬기를 탐하여 부도의 어긋나물 탄하니” <임씨삼대록> 34권 34쪽.

30) “첩은 군즈의 바리인 처지라 돈당구괴 성즈를 드리오스 불초신을 괴롭히고 설져져의 신기비계로 쇼괴 친히 변복위늬흐스 첩을 구하여 경스의 도라왔스나 던후 형시 불민하여 군즈기 득죄함미 만흐니 하면목으로 다시 뵈오리오” <임씨삼대록> 35권 10~11쪽.

행적에 대한 불안함을 지니고 생활하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소현성록> 연작의 윤소저가 유기와 혼인 후 네 명의 아이를 둔 상태에서도 유리결식했던 과거 행적을 이야기하는 남편을 원망하며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 세상과 단절하고 출가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³¹⁾이 그 예이다. 한편 남성의 돌입으로 내외법을 위반하게 된 여성들은 이 일이 자신에게 비친한 행실을 했다는 꼬리표를 만들어주었다는 점에서 혼인 초 심각한 부부 갈등을 겪는 것으로 제시된다.³²⁾

내외법을 위반한 여성들이 그 행실을 비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것은 여성들의 지나친 자기 검열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상층 여성이 외간 남성과 마주하거나 행적을 모른 채 집밖을 돌아다니는 것을 여성의 실행이자 예교를 어긴 것이라고 보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위반 여성의 시비, 유모, 남편, 친정 부친 등 주위 인물들의 위반 여성에 대한 발화에서 거듭 강조된다. <소현성록> 연작에서 정혼자가 있음에도 다른 곳으로 혼인 시키려는 계모의 핍박을 피해 집밖으로 나온 위선화가 정혼자의 가문인 소부를 바로 찾아가지 못하자 시비는 도관에서 머물 것을 권하면서 집밖을 나온 여성의 행적은 의심받기 쉽다는 사실을 전한다.³³⁾ 이러한 시비

31) “비친헌 천가의 잡혀 갖다다 엇디하야 나의 가피 되니 봉관화리 엇디 욱되며 엇디 외람티 아니리오 …(중략)… 아모리 천가의 가 디내여시나 본은 스족이어든 이러 툃 무헝헝리오 …(중략)… 내 비록 운익이 귀구하야 조상부모호고 천신만고를 것 거 겨유 소칭을 만나 결약형미하야 이에 니르러는 연분이 이셔 그딕를 만나니 상 의하야 사란 디 거의 칠 년이라 이즈 이네 잇고 내 비록 불혜하나 칠거를 범티 야냐거늘 무단이 구박하야 욱하니 …(중략)… 내 팔직 무상하야 낭친을 조상호고 천신만고를 것 거 뉴가의 의탁하니 사릅의 천히 너기미 올흔디라 …(중략)… 뉴칭의 머음이 변하면 타인의게 더욱 박복다 괴롱을 드를가 하야 든득 출가홀 의식 니러 나니” <소현성록> 4권 25~28쪽.

32) 이러한 점은 <현몽쌍룡기> 연작의 조월염에게서 확인되는데, 조월염이 양인광의 처소 돌입으로 인해 혼인 초 부부갈등을 겪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장시광, 앞의 논문, 2009, 393쪽.

33) “영춘 왈 소비 심각건대 이에 소부를 츠자가도 일시의 니르기 도티 아니하니 아직 예 이셔 수월 후 내 문져 나아가 소송상을 보옵고 이 말을 고흐야 선쳐히시긔 흐려니와 바로 드러가면 늪이 우이 너길가 흐느이다 …(중략)… 소상국은 웃디 아니

의 반응은 길 위에 나감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노출시킨 여성에게 보이는 일반적인 시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내외법을 위반한 여성들은 간통이나 강간과 같이 실절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면 실절의 위험에 처해있었다는 정황만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혼으로 위반한 여성들은 혼인을 통해, 기혼으로 위반한 여성들은 시가로의 복귀를 통해 가문 안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여성들이 수용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시가 가부장들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반 여성이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이들을 위로하고 불러들이는 중심 역할을 하는 이가 시가 가부장이기 때문이다. 시가 가부장들은 여성의 훼손 가능성을 의심하고 추궁하기보다는 위반할 수밖에 없던 여성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살아서 돌아와 준 것을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여성을 가문으로 유입, 복귀시키려는 태도를 보인다.

혼전에 부모를 잃거나 계모의 핍박으로 인해 집밖으로 내몰린 여성들을 두고 가부장들은 그 정황을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일례로 <소현성록> 연작에서 소현성은 부친을 잃고 도로 유리를 했던 위선화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위선화의 혼례식에서 위반 행위가 절개를 지키고자 한 것이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적극적 행동을 취한다.³⁴⁾ 이는 혼인 이후 집밖에 나가 생사를 알 수 없던 여성들의 경우에도 유사하

시나 쇼공즈는 년쇼호치 등의 싱당하야 사람의 덩스를 슬피디 아니며 대의를 싱각디 아나 혼단 보기를 기리니 엇디 웃디 아니리오 흐믈며 쇼데 가시나 삼년 후 성네는 흐시리니 이 도관이 안정하고 형실이 닷는 사람들도 잡된 일은 업스리니 이에 이시미 울호니이다“ <소현성록> 5권 23~24쪽.

34) “소승상이 늑네를 그초고 만도를 청하야 으즈로 위시를 마즐시 좌등의 널러 곶오디 …(중략)… 불헿하야 위공이 단명하고 공의 부인이 내 집을 느지 너겨 그 덜즈로써 덕녀를 비호고져 하니 이 쏘흔 쓰디로디 위시 아비 유언을 디리고 삼중을 그 초려 형차를 품고 명나의 써러디고져 하는 쓰디 이실시 쇼데 마춤 거두어 강당 양믹 혼 디 두엇더니 임의 복결하야시니 납치는 불셔 혼 거시오 쏘흔 집의 이셔 쇼녀의 구차하미 업슨 고로 금일 낭신을 탁하야 네를 일우느니 널위는 슈고를 강잉하야 요격이 되라” <소현성록> 5권 50쪽.

게 확인된다. <유효공선행록> 연작에서 유세필이 박영아의 행적을 의심하는 것은 소식이 끊겨져 도저히 종적을 알 수 없던 아내의 정절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그 친정 가문 일원들도 박영아의 행적을 어찌 볼까 몰라 선불리 시가로 보내지 않으려는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내외법을 위반한 여성에 대해 갖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어사] 다만 쇼미 명되 괴구호여 희한흔 화란을 만나 몸이 적혈의 싸지고 변복 탈신호여 누리 분주호오매 규중의 네도를 문혀 브려시니 비록 옥이 조호며 어름이 묶은 거시 흐리디 아나시나 빅희예 죄인시오 반비의 궁문 뵈디 아니믈 비기매 스스로 참괴호미 문명의 정실을 감당치 못홀디라 물너 부형을 의탁호여 여년을 못고져 호여 쇼싱으로 호여곰 당돌이 년숙괴 취품호고 문명의게 청호여 허락호시믈 원호오니 엇디 감히 존문의 나아와 명부의 빗출 감호리잇고 [승상] 군의 말이 고이토다 사름이 각〃 시절을 쫓와 경권이 이시니 엇디 일도로 의논호리오 으뵈 몸으로써 녕당을 덕호믈 효되오 변복 탈신호믈 지혜라 조아의 효와 목난의 담냐를 겸호고 나중 식동싱을 쫓와 도라오니 무어시 붓그러오며 명절의 구애호리오 우리 부지 브야호로 탄복 흠이호믈 이괴디 못호겨늘 문득 이런 말노 사름을 의심호니 심히 평일 브라던 배 아니로다 <유씨삼대록> 7권 6~8쪽.

인용문은 생사를 모르던 박영아가 돌아오자 친척 어사 박동문이 그녀의 시아버지 승상 유우성과 거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이다. 박동문은 박영아의 행적이 환란을 만나 도적의 소굴에 들어갔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님으로써 규중의 예법을 어겼다며, 백희나 반비에 비춰보면 누추한 행실이기에 유세필의 정실 소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 유우성의 반응을 보고 박영아의 거처를 정해야겠다고 생각한 박동문의 발언이기에 박영아를 낮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발언은 내외법을 위반한 여성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시선을 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유우성은 내외법 위반을 위반이 아닌 권도(權道)로 규정하며, 모친을 대신해 도적의 소굴에 들어간 것은 효를 행한 것이고, 도적소굴에서 나오기 위해 남장을 한 것은 지혜를 발휘한 것으로 조아(曹娥)와 목란(木蘭)의 담력이나 지략을 박영아가 겸비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 양태보의 집에서 경사로 오는 길은 시아주버니 유세기와 함께 이동한 것이기에 부끄러워하거나 절개에 구애받을 일이 없다는 말로 박동문의 발화를 일축하며, 유세필의 염려와 반대에 불구하고 강경하게 박영아를 유부로 불러들인다.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우성은 박영아가 앵혈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박영아를 믿으며 그 시가 복귀에 유우성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³⁵⁾ <성현공숙렬기> 연작에서 주소저를 임부로 불러들여 임부의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원하는 임한주나 설성염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임희린의 태도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확인된다.

4.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내외법 위반 형상화의 의미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내외법 위반은 작품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개 전형성을 띤 채 재현된다. 이 같은 재현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이 가부장제 사회 속 여성의 내외법 위반을 실행(失行)으로는 여기되, 실절(失節)과는 구분해 인식하려 함을 확인하게 한다.

우선 이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이 내외법을 위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의 제시에서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여성들은 자의, 타의, 우연에 의해서 다양한 원인으로 내외법을

35) 선행연구에서는 유세필과 박영아의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조력자로 시부모와 형제들을, 조력자의 역할이 배우자 옹호임을 지적하였다. 임치균, 앞의 논문, 120쪽;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동의하며, 내외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어 내외법 위반 여성을 집안으로 들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이가 유우성임을 언급하고자 한다.

위반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 특히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여성 스스로 내외법을 위반하는 상황은 악한 성품을 지닌 여성만이 아닌 선한 성품을 지닌 여성에게서도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물론 선한 성품의 여성들의 경우 열절이나 효와 같은 강상 윤리를 위해 내외법을 위반하며, 악한 성품의 여성들의 경우 남성의 애정을 얻기 위해 내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외법 위반 안에서도 성품에 따른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어, 규범의 위반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 지키고자 한 가치에 대한 판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여성들의 성품을 부각하는데 일조하게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자의에 의해 발생한 내외법 위반 가운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내외법 위반도 확인된다. 목숨의 연명을 위해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악한 성품의 여성들은 자신이 벌였던 악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을 때 집밖으로 도망침으로써 내외법을 위반한다. 이 여성들은 훗날 악행이 발각돼 서사에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내외법 위반은 여성의 악한 성품을 강조하는 것일뿐더러 악행의 발각을 지연시키고 서사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선한 성품의 여성들도 목숨, 삶 그 자체를 위해 내외법을 위반하는 모습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발견된다. <소현성록> 연작의 취씨는 출거 후 친정 부모의 죽음으로 살길이 막막해지자 도로 유리를 통해 시가를 다시 찾아오며,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한자연이나 금화공주는 부모의 죽음 이후 대를 잇겠다는 의지 없이 삶을 연명하려는 동기에 따라 집밖 공간에 장시간 머무른다. 또 주난벽은 남편 임경홍이 기첩에게 미혹돼 자신을 죽이려하자 집밖으로 도망친다. 비록 주난벽의 꿈에 선인이 나타나 피하도록 예견을 해주거나, 한자연이나 금화공주의 곁에서 태허법사가 훗날을 생각해서 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는 있지만, 이들이 딱히 내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은 효열절과 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강상윤리를 위해서가 아닌 규범의

위반에 대한 대응을 가문으로의 수용으로 보여주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겪는 여성의 지난한 삶의 굴곡을 다채롭게 드러내는 동시에 위반 여성의 실행(失行)이 꼭 성품에 따른 것만이 아님을 확인하게 한다.

이처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이 위반하는 이들을 악한 성품뿐 아니라 선한 성품을 지닌 것으로 상당수 제시하는 것은, 역으로 내외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여성들이 정절과 관련돼 부딪힐 수 있는 가부장제 사회 속 삶의 구조적 문제들이 성품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악한 성품의 여성들 역시 타의에 의해 내외법 위반을 당하는 모습에서도 확인된다. 악한 성품의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성의 애정을 얻고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며, 남성의 애정을 받는 부인들을 모해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반연화, 광교란, 남영설의 경우에서처럼 이들 가운데 더러는 자신 역시 내외법 위반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당하며, 그 정도는 겁탈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은 내외법 위반이 집밖 공간에서뿐 아니라 집안 공간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의 처신의 어려움을 보다 섬세히 드러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내외법 위반 중 일부는 집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내외법이 여성의 동선을 제한하고, 마주대할 수 있는 남성의 범주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때 기실 집안은 여성에게 내외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집안에 있는 가문 구성원들은 내외법 위반 범주에 드는 이들이 아니며, 외인들의 출입은 이미 외현에서 차단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우연한 방문이나 돌입에 의해, 혹은 다른 여성의 시기로 인해 납치를 당함으로써 내외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겪는 것으로 그려진다. 물론 집안에서의 내외법 위반 상황은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반연화나 <현몽쌍룡기> 연작의 천화군주처럼 스스로 좋아하는 남성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으며,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옥선군주처럼 처소로 남성을 불러들여 간통을 벌이는

이도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며 이는 대다수 타의에 의해 벌어진다는 점에서 집안 공간 역시 여성의 의지나 행실과 관계없이 내외법을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정절 의심에 대한 추문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하는 동시에 그만큼 여성으로서의 행실의 어려움을 알게 한다.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은 내외법을 위반한 여성들에게 실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가문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이 작품들이 실행(失行)과 실절(失節)을 분리해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들은 내외법 위반 여성들의 정절 고수를 제시하기 위해 몸의 순결성을 증명해보이고자 앵혈을 드러내며, 앵혈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동행인 제시나 부부 동침 장면 묘사를 통해 정황 상 실절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 같은 방식을 동원해서까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정치가 아닌 수용으로 그려내는 것은 위반 시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절에 대한 의심을 실행(失行)과 분리시키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실행을 실절과 분리해 인식하는 모습은 위반 여성들에 대해 처벌 대신 가문으로 수용이라는 대응을 보여줄 때 지위 부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위반 여성들이 가문으로 유입되거나 복귀될 때의 지위는 남성의 둘째부인이나 셋째부인 혹은 첩과 같은 위치만이 아닌 총부(冢婦)나 첫째부인의 위치로도 제시된다. 혼전에 내외법을 위반한 경우, <소현성록> 연작의 이옥주나 <현몽쌍룡기> 연작의 이화벽처럼 남성의 둘째, 셋째부인의 위치로 가문에 유입되는 이도 있지만, <소현성록> 연작의 위선화나 <현몽쌍룡기> 연작의 정채임처럼 남성의 첫째부인으로 가문에 유입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선화나 정채임이 혼전일지라도 정혼 이후 내외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정혼 당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가문 내 수용이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더라도 위반 상황이 여성의 가문 내 지위에 변동은 주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혼인 이후 위반한 여성들은 위반 전에 가문에서 지냈던 위치를 유지한 채 복귀하는 것으로 그려져, 위반 사실을 문제 삼아 수용에 있어 위계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을 확인하게 한다. 이처럼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이 내외법 위반을 재현하는 것은 여성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게 한다.

기실 국문장편소설 이외에도 많은 고소설 작품들이 여성의 내외법 위반을 보여준다. 상층 신분으로 외간 남성과 접촉이 있거나 집밖으로 나가는 여성들은 <구운몽>이나 <사씨남정기> 그리고 여성영웅소설과 같은 작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구운몽>의 정경패는 자신의 외모와 자질을 보고 싶어 한 나머지 여장을 하고 찾아온 양소유로 인해 한 공간 안에 앉아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내외법을 위반한다. 그런데 정경패는 이를 두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³⁶⁾, 그 정도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여성들처럼 규방의 죄인으로 자처한다든지,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살겠다는 결심으로까지 나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수치심을 갚아줄 방법을 궁리하며 급기야 시비 가춘운을 통해 양소유를 골려주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영웅소설 속 여성주인공들에게서도 내외법 위반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설소저전>, <김희경전>, <이대봉전>, <이봉빈전>, <양주봉전>, <황장군전>, <음양옥지환>, <운향전>의 여성주인공은 위기 모면을 위해, <옥주호연>, <이학사전>, <정현무전>, <방한립전>의 여성주인공은 입신양명을 위해, <위봉월전>, <정수정전>의 여주인공은 원수에의 복수를 위해, <홍계월전>의 여주인공은 부모의 의지에 의해 남장을 한다.³⁷⁾ 그런데 여성영웅소설의 내외법 위반은 정절의 문제보다 남녀의 소임에 대한 구분을 위반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점에서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 이를 바라보는 것과는 차

36) “내 일싱 이 내 몸 앓기기를 옥궂티 하여 발즈최 둥문의 니르디 아니호고 친척이 낫 보기 적은 줄은 춘낭이 아는 배라 일도의 간샤호 사름의 속오미 되야 반일을 슈작하여 뱃기 어려운 옥을 보니 낫출 들고 어이 사름을 디호리오” 장효현, 『구운몽』, 신구문화사, 2008, 67쪽; “쇼녀의 마음이 붓그리오미 업스디 사름의게 그대로 속은 줄을 익달과 호느이다” 장효현, 위의 책, 73쪽.

37) 이윤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돈암어문학』 제13집, 돈암어문학회, 2000, 278~282쪽.

이를 갖는다. 때문에 여성여웅소설의 여성들이 내외법 위반이 예교를 어그러뜨린 것임을 인지하는 것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 속 여성들과 유사하게 그리면서도, 위반 여성들이 이로 인해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주위인물들이 이들에게 육체적 순결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위반 행실을 정절과 연관 지어 논의하거나 고민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미루어 볼 때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이 내외법 위반을 여타의 고소설 하위 작품군에 비해 정절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국문장편소설이 서사 분량이 거칠이기 때문에 인물들의 심리나 발화가 길게 나타나며 유사한 모티프나 단위담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대 사회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가 민감했던 점을 고려할 때 악한 성품의 여성만이 아니라 선한 성품을 지닌 여성들에게 실절의 가능성을 가진 내외법 위반을 거듭 보여주며, 내외법 위반이 집밖에서만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위반에 대한 인물들의 생각을 그려낸다는 것은 이에 대해 국문장편소설의 작가들이 고심해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여타의 고소설 하위 작품군과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이 내외법 위반을 규범의 위반으로 인식하는 점은 유사하게 보여주더라도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은 위반 당사자뿐 아니라 주위인물의 반응을 통해 위반 사실을 강조하며, 위반에 대한 시선을 입체적으로 담아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이 내외법 위반을 재현하는 것은 이를 향유하는 이들에게 공감과 안도감을 제공했으리라 여겨진다. 이는 작품이 향유되던 조선후기 사회에서 여성의 내외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견주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유교적 여성관에 입각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관리하는 규제들을 만들었는데, 내외법 역시 법령들로 구체화했다. 그런데 내외법의 경우 세부 규제에 비해 처벌 규정까지 세세하게 갖춰져 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397년(태조 6)에 사대부가 여성이 만날 수 있는 남성의 범주를 제한하고, 1407년(태종 7), 1485

년(성종 16)에 여성의 집박 출입 규제를 법전에 실었으며, 《경제육전》 예전에서 이를 어기는 자는 실행(失行)으로 논하대라고 함으로써 규제들을 보다 구체화 한 것은 사실이나 처벌 규정은 간통이나 강간으로 훼손을 했을 때와 같이 자세히 갖추고 있지 않다.³⁸⁾ 실행으로 간주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억울한 상황에서 위반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내외법 위반을 빌미로 여성의 행실을 문제 삼는 경우는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 신태영(申泰英)은 유정기(兪正基, 1645~?)에게 내외법 위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당한다. 첩으로 인해 자신을 박대한 남편을 피해 전처의 아들집에 옮겨와 지내던 신태영은 유정기가 찾아와 핍박을 가하자 여종들과 밤에 아들집에서 나오는데, 이를 두고 유정기는 신태영이 실절했다며 이혼을 청구한다. 예조는 소장을 낸 것이 사건 발생 15~6년이 지나서라는 점에서 이혼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³⁹⁾ 여성의 육체적 순결을 문학적 상상력이 만들어 낸 앵혈을 통해 현실에서 증명해 낼 방법은 없다. 신태영 사건은 시비가 동행을 했지만 밤중에 집박을 나선 여성의 정절이 훼손 되었을 가능성, 실행(失行)을 곧 실절(失節)로 보고자 하는 시선과 알 수 없다고 보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편의 핍박을 피해 시비를 동행하고 밤중에 집박을 나선 신태영의 모습은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주난벽이 내외법을 위반했던 상황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난벽과 달리 법적으로 이혼 당하지 않

38) 이숙인, 앞의 책, 45~47쪽; 이와 함께 “실행의 처벌이 법전의 규정을 적용하기보다 그때마다의 상황 논리가 작용했다”는 점과 “실행이라는 추상적 언어가 점점 범주를 확대하면서 여성의 행위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개념으로 변화해 되었으며, 그런 점에서 ‘실행’이라는 용어는 담론의 성격이 강한 조선의 정치에서 ‘사실’은 권력 관계에 따라 과장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왜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이숙인, 앞의 책, 63쪽, 151쪽.

39) 신태영과 관련된 부분은 정해은, 『조선의 여성, 역사가 다시 말한다』, 너머북스, 2011, 27~34쪽, 이숙인, 앞의 책, 156~159쪽을 참조, 인용한 것이다.

있을지라도 남편으로부터 실질 여부를 추궁 받아 가문 안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신태영의 모습은 내외법 위반이 당대 여성에게 가져다주는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경우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처럼 장시간 생존과 거처를 알 수 없던 여성들이 존재한다. 전쟁 중 포로가 된 이들로, 생환 여성의 처리 문제는 조정에서 오래 기간 논의될 정도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신평부원군(新豊府院君) 장유(張維, 1587~1638)는 적에게 잡혀갔다 속환되어 온 며느리를 다시 받아들여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혼을 허락 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린 반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한이겸(韓履謙)은 살아 돌아온 딸을 두고 사위가 다시 장가를 들려하자 원통함을 호소한다.⁴⁰⁾ 병자호란에서 생환해 온 여성들의 처리는 육체적 실절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훼손했다는 문제가 겹쳐져 있다. 그러나 이같이 여성의 처리를 두고 시가와 친정이 보여주는 상반된 태도는 내외법 위반 여성이 시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당대의 시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사대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18세기 후반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사형 범죄 처벌 기록을 모은 『심리록(審理錄)』에서 인명 사건 중 여성의 추문에 관련된 것이 46건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여성의 정절에 관한 당대 인식을 알 수 있는데, 성 관계로 인한 인명 사건이 119건이라는 점⁴¹⁾을 고려한다면 추문으로 인한 사건이 그 절반에 해당된다는 것은 여성이 정절에 얽힌 추문으로도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알게 한다. 즉 조선후기 여성들은 연령이나 길 위에 있던 기간과 상관없이 내외법을 위반하거나 그와 연관된 추문에 휩싸일 경우가문이나 국가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40) 장유와 한이겸과 관련된 부분은 이숙인, 앞의 책, 142~149쪽을 참조, 인용한 것이다.

41)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연구』, 태학사, 2009, 13~17쪽, 150~154쪽 참조.

이에 견주어 볼 때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 내외법 위반으로 인해 실행(失行)한 여성들을 실절(失節)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시가 가부장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은 당대 현실에 비춰보았을 때 예외적 행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작품 안에서 이들이 중심가문의 딸이나 며느리이며, 중심가문 남성의 첫째부인이거나 총부(冢婦)로도 등장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러하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외법을 만든 것은 그만큼 조선이 사대부가의 혈통에 대한 순수성에 신경을 곤두세웠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작중에서 내외법을 위반했으나 수용되는 여성들은 가문의 혈통을 낳았거나 앞으로 계속 낳을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작품 속 시가 가부장의 태도는 조선 현실에 비춰볼 때 그것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은 필사의 형태로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꾸준히 향유된 작품들이다. 특히 현재까지 <소현성록>이 22종의 이본, <유씨삼대록>이 44종의 이본, <성현공숙렬기>가 8종의 이본이 확인되는 점⁴²⁾이나 <조씨삼대록>이 구활자본으로 출간되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⁴³⁾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작품은 지속력을 가지고 읽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향유했을 사대부가 여성들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 재현된 내외법의 위반의 상황들을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물론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 안에서 작품에 따라 내외법 위반의 빈도나 정도의 차이는 나타난다. 초기작인 <소현성록> 연작에 비해 <성현공숙렬기> 연작이나 <현몽쌍룡기> 연작에는 내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체로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 내외법 위반 상황을 인식하는 인물들의 태도나 대응 방식은 유

42)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282~283쪽; 304~306쪽; 471~475쪽.

43) 신구서림 활자본 고전소설 간행 목록에 제명이 언급되어 있으나 현재 실물이 발견된 상황은 아니다. 엄태웅, 『활자본 고전소설의 근대적 간행 양상 - 신구서림의 간행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103쪽;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9, 2~3쪽 참조.

사하게 재현되고 있다.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은 내외법 위반 상황과 다른 가치가 충돌될 때 내외법 위반을 택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향유자들로 하여금 그 이후 여성인물이 짊어질 삶의 무게에 대해 궁금해 하며 긴장감을 유지하고 독서에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또 위반을 행한 여성인물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향유자들에게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감정을 투사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위반 여성인물을 시가 가부장의 주도 아래 가문 안으로 포용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이해의 시선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안도감과 위안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당대 현실과 다른 규범 위반에 대한 대응 방식은 향유자들에게 유교적 여성관이 제시한 여성의 몸체에 대한 관리의 시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보도록 하는 틈새를 만들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나가며

이 글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내외법 위반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층 사대부 가문의 일상사를 주로 담아내는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는 여성의 내외법 위반이 상당수 나타나며, 이 같은 형상은 전형성을 띤 채 드러나고 있다.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이 비록 송(宋)이나 명(明)을 배경으로 작중 세계를 펼치고 있지만 작중 인물들의 행위나 세계관은 이를 향유한 조선시대 당대인들의 사고 아래 만들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때문에 작품 속에서 재현된 내외법 위반은 작품을 향유하던 이들의 당대적 사고 아래 문학적 상상력으로 발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은 거질의 서사에서 내외법을 위반하는 여성의 위반 사실을 주목하고, 이를 장면으로 담아내며, 더 나아가 위반하는 여성들이 규범을 위반한 데서 갖는 자책감과 고통을 탄식이나 자기 비하

그리고 눈물 등으로 통해 섬세하게 묘사한다. 아울러 위반 여성들의 상황을 시비나 유모 혹은 남편들과 같은 주변 인물을 통해 실절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지시킨다. 이처럼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규제의 위반 상황 그 자체를 문제시 삼고, 위반이 곧 실행이자 실절로 추측 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은 소설이 향유되던 당대 사회의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내외법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이 내외법을 위반한 여성들을 이 행위만으로 악인으로 규정짓지 않으며, 위반에 대한 처벌을 내리기보다 가문으로 수용하며 이에 시가 가부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대응방식을 보여주는 점은 내외법 위반에 관한 소설 향유층이 보여준 문학적 상상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당대 조선사회가 내외법을 위반한 여성의 행실을 실행으로 문제 삼고 그에 대해 이해의 시선보다는 실절에 대한 의구심을 보였던 것과 달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이 이를 실행으로 규정하되 실절과 분리해 인식해 보고자 한 것을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 글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내외법이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행동 규범이라는 점과 국문장편소설에서 남성의 내외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국문장편소설 속 남성의 내외법 위반을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본다면 국문장편소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성현공숙렬기> 규장각 소장본 25권 25책.

<소현성록> 이화여대 소장본 15권 15책(<소씨삼대록> 합본).

<유씨삼대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0권 20책.

<유효공선행록> 규장각 소장본 12권 12책.

<임씨삼대록> 장서각 소장본 40권 40책.

<조씨삼대록> 서강대 소장본 40권 40책.

<현몽쌍룡기> 장서각 소장본 18권 18책.

『禮記』

『내훈』, 소혜황후 지음, 이경하 주해, 한길사, 2011, 1~432쪽.

『여사서』, 이숙인 역, 여이연, 2003, 1~386쪽.

『구운몽』, 장효현, 신구문화사, 2008, 1~424쪽.

2. 단행본 및 논문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연구』, 태학사, 2009, 1~346쪽.

엄태웅, 『활자본 고전소설의 근대적 간행 양상-신구서림의 간행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1~114쪽.

이숙인, 『정절의 역사』, 푸른역사, 2014, 1~424쪽.

이순구, 『조선초기 내외법의 성립과 전개』, 『청계사학』 5, 한국학중앙연구원, 1988, 113~132쪽.

이운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돈암어문학』 제13집, 돈암어문학회, 2000, 263~292쪽.

임치균, 『‘아내의 정숙함’을 의심하는 남편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방식 고찰』, 『문학치료연구』 22권,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107~130쪽.

장병인, 『조선 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연구』 121호, 한국사연구회, 2003, 83~116쪽.

장시광, 『〈소현성록〉 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28집, 우리어문연구학회, 2009, 131~165쪽.

장시광, 『〈쌍천기봉〉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187~232쪽.

장시광,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 45, 배달말학회, 2009, 217~255쪽.

- 장시광,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론총』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223~269쪽.
- 장시광, 『<현몽쌍룡기> 연작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국어국문학』 152, 국어국문학회, 2009, 365~410쪽.
- 정병설, 『정도와 권도, 고전소설의 윤리 논쟁적 성격과 서사적 의미』,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5, 355~390쪽.
- 정지영, 『조선시대 부녀의 노출과 외출: 규제와 틈새』, 『여성과 역사』 2집, 한국여성사학회, 2005, 149~181쪽.
- 정혜은, 『조성의 여성, 역사가 다시 말한다』, 너머북스, 2011, 1~280쪽.
- 정혜경, 『조선 후기 장편소설의 감정의 미학-〈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현씨양옹쌍린기〉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 학위논문, 2012, 1~221쪽.
- 조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남성 섹슈얼리티의 재현 양상』, 『고소설연구』 제 20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381~411쪽.
-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1~907쪽.
- 최기숙,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량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 3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37~74쪽.
- 최길용, 『고소설에 나타나는 앵혈화소의 서사 실상과 의미』, 『고소설연구』 제2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41~84쪽.
- 최수현, 『<임씨삼대록> 여성인물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 1~189쪽.
- 최어진, 『고전장편소설의 복장전환 화소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3, 1~86쪽.
-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171~196쪽.
- 한길연, 『여성교육과 부부갈등의 관련양상 연구-『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6,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1, 321~355쪽.
-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9, 1~200쪽.

Abstracts

A Study on the Forms, Methods and Meanings of a Wrong Deed Appearing in Three-Generation Stories of the Chosun Dynasty.

-Focusing on the Violation on the "Law Stipulating the Norms that Women have to Observe"-

Choi, Sue-Hyu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find out the forms, methods and meanings of the violation on the "law stipulating the norms that women have to observe" in Three-Generation Stories of the Chosun Dynasty. The "law stipulating the norms that women have to observe" was constituted in the Chosun dynasty in a bid to reinforce women's chastity in a more effective manner by defining the boundary of the distance and space that women can keep from strange men and can move. Not a few women who violate the law, above stated, are found in Three-Generation Stories of the Chosun Dynasty, which was steadfastly popular during late the Chosun dynasty.

However, this novel takes measures to demonstrate the chastity of women violating the law, by dropping the blood of a patriot around the arms of those women or providing the evidence that there is a fellow who can verify their innocence.

These developments show that women violating the law are not punished for their wrong deed but are admitted of their innocence and acknowledged as the family members. Besides, this novel does not solely focus on the essential ethical norms women have to follow but describes various motives in which women violating the

law cannot but violate—only those motives which prevent those women from being treated as criminals. In addition to this, this novel suggests through the delicate depiction of the mental stress that women violating the law feel that it entirely depends on the decision by their husbands' families whether those women are acknowledged again as the members of the married families.

That the violation on the "law stipulating the norms that women have to observe" is selected as the theme in *Three-Generation Stories of the Chosun Dynasty* reveals that women violating the law suffered from very serious pains in the Confucian patriarch society and that violating the law was viewed as a wrong deed which was separated from the loss of chastity.

Key words : *Three-Generation Stories*, The "Law Stipulating the Norms that Women have to Observe", Violation, Sexuality, Chastity, Wrong Deed, the Loss of Chastity

■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3일에 접수되어, 2014년 12월 5일에 심사 완료되고, 2014년 1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